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67
----------	-------

발의연월일 : 2026. 6. 10.

발 의 자 : 이훈기·김 윤·김현정
이해민·전진숙·김남희
서영석·민병덕·이인영
남인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장애인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중 하나로 약사가 약국·가정·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자·만성질환자 등의 경우 다제약물 복용이 증가하면서 의약품의 오남용, 중복 처방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은 단순 복약지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지원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사가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범위에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제7호).

법률 제 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호 중 “복약지도”를 “복약지도 등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7.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u>복약지도</u></p> <p>8. (생략)</p>	<p>제15조(보건의료) ----- -----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 ----- -----<u>복약지도</u> 등 <u>의약품의 적정한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u></p> <p>8. (현행과 같음)</p>